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4026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4.03.24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18-09-28

홈페이지 www.구어스.com

대표 이메일 cwc75@ddf.co.kr

[구 어 스] 정 보 공 개 서

(주)델리핸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18 . . .

(주) 델 리 핸 즈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델리핸즈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2,A동 2405호
대표전화번호	02-454-9292
대표팩스번호	02-2201-924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경영지원부 / 02-454-9292

< 목 차 >

1. 가맹본부 인사말 및 바보스 소개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9.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별첨 서류

[별첨 1]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 2017, 2016년, 2015년

[별첨 2] 주방설비 및 집기 등 개설시 필수공급품목

[별첨 3] 원부재료 등 필수공급품목

[별첨 4]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당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는 정확한 내용 및 별첨 서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는 당사의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용의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1. 가맹본부 인사말 및 구어스 소개

1. 구어스 인사말 및 브랜드 스토리

오븐 치킨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자, 대대에프씨 대표인 조동민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은 가맹점주입니다.

가맹점주의 성공을 위해 구어스는 100호점까지 가맹본사 마진에 따른 거품을 없애고
가맹점주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원가들을 인하하고 가맹점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가맹본부에 남아있는 수익금으로 고객에게는 쾌적한 공간을, 그리고 창업자 여러분에게는
사업의 품격을 높여주는 인테리어에 투자하십시오.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경제적 안정이라면 먼저 그 길을 달려본 경험자와
상의를 하고 방향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당사의 28년 동안 명함이 바뀌지 않는 한길로만 달리는 꾸준한 신념,
28년이라는 시간이 일구어낸 많은 창업인프라, 불류 생산공장을 직접운영하며
불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점주님들과의 약속,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창업관련 전문가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항상 점주님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구어스로 꾸준히 달려겠습니다.

대대에프씨

대표이사 조동민




건강과 다이어트, 웰빙을 생각하는 건강치킨
맛과 건강을 생각하는 구어스입니다.

대세는 후라이드 치킨이지만,
구어스의 오븐치킨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열량이 낮고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습니다.



구어스는 오븐치킨 가격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갑니다.
구어스는 기름에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웰빙 건강 치킨입니다!

몇 년 전부터 불려온 Well-Being의 문화는 그저 지나가는 트렌드의 하나일 것이라 여겼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웰빙"은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븐에 구워 기름을 제거한 치킨은 불필요한 지방의 체내축적을 막아주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항상 몸매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닭고기를 부담감 없이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엄선된 국내산 100% 닭고기를 220°C 오븐에서 기름을 쏙 뺀 치킨으로
현대인의 바쁜 라이프스타일과 복잡한 사이클을 고려하여 좀더 Simple하고 좀더 Trendy하며
Stylish한 치킨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재해석한 브랜드를 지향합니다.
구어스에서 건강에 좋은 오븐치킨을 부담없이 마음껏 즐기세요.

WELL-BEING



2. 구어스 매장전경 및 메뉴

매장전경 (예시)



메뉴 (예시)



2.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및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주)델리헨즈			
사용 브랜드		구어스 외 1개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2,A동 2405호			
본부설립일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1997.01.01	2008.01.16	2008.01.29	조동민	1666-9595	02-2201-9241
법인등록번호		120111-0454372	사업자등록번호		131-86-06393

※ ‘구어스’는 구어스치킨으로 2007년 7월 1일 (주)숲과나무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주)델리헨즈가 브랜드를 인수하여 가맹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법인 대표이사	조동민	구어스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2,A동 2405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07.29. ~ 현재		조동민	1666-9595	02-2201-9241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등기이사)	조승훈	구어스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2,A동 2405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04.29. ~ 현재		조동민	1666-9595	02-2201-9241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사용인 (등기감사)	김록수	구어스외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2,A동 2405호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8.01.16. ~ 현재		조동민	1666-9595	02-2201-924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2013년 9월 바비큐보스를 브랜드 리노베이션을 통해 구어스는 영업감시를 변경하였으며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구어스	치킨호프 전문점
상 호	구어스 _____ 점	점포명은 행정구획 또는 특정지명을 따름
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 제 4500236690000 호
		상표(서비스표) : 제 4500352450000 호
광 고	가맹본부 소개 참조	
그 밖의 영업표지		회사 CI
		현재 사용하고 있는 BI

5.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5년	385,425	1,446,985	-1,061,559	5,618,257	-1,516,257	-1,420,971
2016년	245,421	1,005,537	-760,115	2,828,083	-92,750	301,444
2017년	100,348	848,867	-748,519	2,046,329	25,682	11,595

☞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별첨1]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당사는 구어스, 꿀닭 외 다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의 매출액은 가맹사업 매출액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 현 임원의 명단 및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의 개인별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 간	직 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조동민	대표이사	2012.07.29. ~ 현재	(주)델리한즈 회사총괄	회사 업무 총괄
	조승훈	기타비상무이사	2009.04.29. ~ 현재	(주)델리한즈 기타비상무이사	점포운영
	김민성	이사	2012.12.24. ~ 현재	(주)델리한즈 브랜드 매니저	가맹영업 및 관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록수	감사	2008.01.16. ~ 현재	(주)델리한즈 등기감사	감사

7.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2016년 12월 31일	상근	비상근	2
	2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경영한 사실

☞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했던 가맹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 /이름	영업표지	구분	기간	사업내용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가맹본부	(주)델리 핸즈	꿀닭	가맹사업 경영	2012.04.12 ~ 현재	꿀닭이라는 영업표지의 외식사업 경영	20120100157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의 지식재산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등록권리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상표	29류, 43류	출원 2007.07.23 등록 2008.06.24	출원 제4520070003032호 등록 제4500236690000호	(주)델리핸즈	2018.06.24.
상표	29류, 30류, 35류, 43류	출원 2010.01.18 등록 2011.06.27	출원 제4520100000183호 등록 제4500352450000호	(주)델리핸즈	2021.06.27.

3.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짜 : 2007 년 7 월 1 일

2. 구어스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이름	가맹사업경영기간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주)숲과나무	구어스치킨	한선옥	2007.7.1~2013.11.29.	서울 송파구 오금동 121-4 2층
(주)대대애프씨	구어스	조동민	2012.4.12.~ 2017.9.13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2,A동 2405호
(주)델리핸즈	구어스	조동민	2017.9.14.~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22,A동 2405호

※ 당사의 구어스는 (주)숲과나무가 2007년 7월 1일부터 운영하던 브랜드로 2013년 11월 30일 (주)델리핸즈가 인수 받아 현재 운영중인 브랜드입니다.

3. 구어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구어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치킨	오븐구이치킨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15. 12 .31.			2016. 12 .31.			2017. 12 .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3	13	-	10	10	-	11	11	-
서울	2	2	-	2	2	-	4	4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1	1	-	-	-	-	-	-	-
경기	4	4	-	3	3	-	3	3	-
강원	1	1	-	1	1	-	1	1	-
충북	-	-	-	-	-	-	-	-	-
충남	2	2	-	2	2	-	1	1	-
전북	-	-	-	-	-	-	-	-	-
전남	2	2	-	1	1	-	1	1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사업연도	연초	신규개설	계약종료	계약해지	명의변경	연말
2015년 12월 31일	21	-	-	8	-	13
2016년 12월 31일	13	1	4	-	2	10
2017년 12월 31일	10	2	1	-	-	11

※ 직영점 및 가맹점의 자세한 현황은 당사에 비치되어 있는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구어스와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구어스]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15.12.31.	2016.12.31.	2017.12.31.
가맹본부	(주)델리한즈	꿀닭	20120100157	패스트푸드	52/1	39/0	23/0

7.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

☞ [구어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17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17년말 가맹점 수	2017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 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	상한	면적 3.3㎡	하한	면적 3.3㎡	
전체	11	99,607	5,255	229,818	21,668	4,548	333	
서울	4	해당없음						5곳미만
부산	-	해당없음						점포없음
대구		해당없음						점포없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점포없음
대전	-	해당없음						점포없음
울산	-	해당없음						점포없음
경기	3	해당없음						5곳 미만
강원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점포없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점포없음
전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점포없음
경남	-	해당없음						점포없음
제주	-	해당없음						점포없음

※ 신규 오픈점 및 계약종료 계약해지 양도양수 등으로 인하여 매월 가맹점 숫자가 일정하지 않으므로, 1개월이상 영업하였던 가맹점 기준으로 연평균매출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위 금액 은 당사 물류매출액에 의한 추정치입니다.

※ 당사에서 사용한 월 평균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서울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가맹지역본부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대표자의 이름, 대표전화번호, 관리지역 및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관리하는 가맹점 수

☞ 해당 없음 : 당사는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의 가맹본부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

☞ 2017년 [구어스]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 고
			합 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843	843	-	2015.12.31.기준
광고						
		소 계	843	843		
판촉	인쇄물	2017.01.01~2017.12.31	-	-		홍보브로셔 제작

☞ 당사의 연간 광고비 및 판촉비(4,216천원)는 2017년 손익계산서상의 도서인쇄비와 광고선전비 등의 합계 금액으로 당사의 꿀닭 브랜드의 광고, 판촉 비용(3,372천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기관의 상호, 예치업무 담당 부서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 당사가 정한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의 상호	담당 부서	주 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중곡점	수신부 프랜차이즈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2동 140-29	02-458-1111

☞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하나은행 중곡점에 계약 체결 다음 날 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하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델리핸즈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내역

☞ 당사가 체결한 피해보상보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	
피보험인(보험계약자)	(주)델리핸즈	가맹본부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험기간	가맹계약체결일 또는 최초 예치가맹금 납부일 ~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사업개시일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예치 가맹금 이하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가맹본부 경유→보험회사 접수→보험회사 조사→지급 여부 결정→보험금 지급	평균 [1]개월소요

4..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의 부담

귀하가 [구어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대략 금 육천사백오십만원(₩64,500,000)<VAT포함/66㎡(20평)기준>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별도구입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 당사의 최초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8,800,000]				(예외조건)
가맹비	5,500,000	계약체결일	반환안됨	가맹점모집시 비용소요	공사전계약해지시 정산 후 반환
교육비	2,200,000	계약체결일	반환안됨	교육비용으로 비용소요	교육전 해지시
홍보물품비	1,100,000	계약체결일	반환안됨	영업개시를 위한 실제비용	홍보물품 발주전

※ 당사는 가맹비 수령의 대가로 영업표지 사용허락 및 가맹점운영권 부여(20%), 지역상권부여 및 보호(20%), 운영 및 영업 Know-How 제공(20%), 개업시 홍보 및 영업활동 지원(10%), 기타 운영 매뉴얼 등 각종자료를 제공(30%)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비는 9일 동안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비용입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되는 대가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반환 조건
[합계]	[2,000,000]			
물품보증금	2,000,000	계약체결일	물품 및 로열티 등의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담보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정산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금액
[합계]	[10,800,000]
가맹비	5,500,000
교육비	2,200,000
홍보물품비	1,100,000
물품보증금	2,000,000

4) 최초 가맹금 외에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 비용,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 정해진 기간을 넘길때 추가로 생기는 금융비용 등 그 밖의 필요비용

☞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53,700]				66㎡ 기준
필수설비(정착물)	협력업체 외 1개사	13,200	660	설치 1일 이전	설치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35,200	1,760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자율시공 가능 : 감리비 부담
간판	협력업체	3,300		외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3일 이후	공사 전 계약취소	자율시공 가능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2,0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소모품비,초도비 품, 오픈 판촉물 등

※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필수설비는 추가되지 않지만 인테리어는 1,760천원 추가부담을 할수 있습니다.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의 크기, 구조, 점주 선택사항, 구입품목, 구입수량, 설치 기간을 초과하여 생기는 추가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공내역 및 지급대상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비용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① 감리비 : 인테리어는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시공할 경우 당사는 직원을 파견하여 이를 감리(관리 및 감독)하고, 이의 비용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3.3㎡(평) 당 금 이십만원 (₩220,000)<VAT포함>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필수 구입 내역 : 주방기기 및 집기, 초도상품은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가맹본부에서 시공 및 구입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은 자체 구입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시청 등에 따른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당사 조언 요청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요청이 있는 경우	담당자 배정→가맹희망자 선정 사업장 방문→입지 및 상권분석→분석 및 결과 타당성 유무 통지→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요청이 없는 경우	가맹희망자 입지 도출→가맹희망자 최종 결정

※ 점포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지 선정에 따른 최종결정은 반드시 가맹희망자가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권리의 하자 등을 이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채용 및 교육에 대한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이거나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이거나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장비, 정착물 등의 물품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63,400	총액의 40%	30%	30%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5일	계약일+10일
비 고				오픈전 3일까지

2. 영업 중의 부담

- 1) 상표사용료,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 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등 정기지급금 (로얄티)	가맹본부	월 330,000	익월 5일까지	반환 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본사 지정주류 사용시 면제될수 있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총광고비용의 50% 중 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청구서 수령후 1주일 이내			광고판촉활동 내용 참조
교육훈련비		해당없음				가맹본부전액부담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리모델링 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가맹본부	임대시: 38,500원	매월말일	반환안됨	관리비로 비용소요	임대시조건 36개월의 약정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금전지급 채무를 지채한 경우

※ 위 내역은 가맹본부 경영방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재고관리,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를 감독하는 내역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직원의 요구시	문의: 운영팀 (02-454-9231)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직원의 요구시	문의: 재경팀 (02-454-9292)

※ 귀하는 상품·자재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 등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 양수양도로 양도받은 경우는 제외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

☞ 귀하가 운영하는 [구어스]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처분일 2개월 전에 당사의 서면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별도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인계 받은 기간 종료 후 당사와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양도받은 기간은 양수인의 최초 계약기간의 잔여 일에 대하여만 양도가 가능하며, 본사와 사전 협의시 양수양도 시점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

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부담 비용

(1) 합의 해지로 인한 부담 비용

☞ 귀하와 당사는 공사가 개시되기 10일 전까지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행했던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합의 해지가 아닌 경우로 인한 부담 비용

☞ 귀하는 당사가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귀하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 될 경우 당사가 실비 지출한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액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일반해지 및 즉시해지,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당사는 계약 만료 및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 기한 내에 당사가 정한 종료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료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구어스’ 시스템 및 식단, 조리법, 운영방법, Know-How 등 ‘구어스’의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지식재산권과 간판, 휘장, 로고 등 ‘구어스’에 관한 일체의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7일 이내에 귀하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이의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귀하가 부담합니다.
- ② 귀하가 기한내에 철거 및 원상복구를 지체하는 경우 당사가 직접 철거하거나, 지체기간에 대하여 면적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면적) 금 천오백원(W1,500)씩, 즉 $[\text{매장면적}(\text{㎡}) \times \text{지체일수} \times 1,500]$ 으로 산출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물품보증금에서 정산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계약이 기간만료 및 해지로 종료한 때에는 미지급된 가맹금 및 손해배상금을 정산한 후 물품보증금의 잔액을 15일 이내에 반환하게 됩니다.
- ④ 귀하는 당사와 이의 절차를 통해 가맹계약이 종료하게 됩니다.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할 경우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

☞ 당사는 [구어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및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31. 기준)

판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구어스	구어스+양념구어스	왼쪽에 기재된 상품만 판매가능	1차 : 구두경고 2차 : 서면경고 3차 : 상품공급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마늘구어스	구어스+마늘구어스		
핫구어스	구어스+참숯바베큐		
마늘간장구어스	구어스+핫구어스		
크런치순살강정	구어스+후라이드베이크		
후라이드베이크	구어스+순살구어스		
구어스립	구어스+마늘간장구어스		
참숯바베큐	구어스+파파닭		
순살구어스	구어스+순살양념구어스		
파파닭	구어스+불닭		
불닭	구어스+구어스립		
닭다리	훈제삼겹살 파셀러드		
통날개	오리훈제셀러드		
양념구어스	해물볶음면		
순살양념구어스	케이준치킨셀러드		
다리반+날개반	영양꼬치		
모듬수제소시지	얼큰번데기		
매운무빠닭발	골뱅이소면		
가쓰오어묵탕	얼음황도		
얼큰해물짬뽕탕	모듬포구이		
통노가리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제한받는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 제한내용 :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물품공급이 중단된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책임 : 상품공급의 중단 또는 가맹계약 해지
------------------------	-----------------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통지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귀하는 당사의 조언 내지 당사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제시하는 <권장가격>은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가맹점의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이며, 귀하가 판매촉진 등의 필요로 <권장가격>과 다르게 판매가격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역을 당사에 문서로 통보하고 합의 후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메뉴별 권장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12.31. 기준)

판매 상품명	권장가격	판매 상품명	권장가격
구어스	14,000	구어스+양념구어스	21,000
마늘구어스	15,000	구어스+마늘구어스	21,000
햇구어스	15,000	구어스+참숯바베큐	21,000
마늘간장구어스	15,000	구어스+햇구어스	21,000
크런치순살강정	16,000	구어스+후라이드베이크	21,000
후라이드베이크	15,000	구어스+순살구어스	21,000
구어스립	17,000	구어스+마늘간장구어스	21,000
참숯바베큐	15,000	구어스+파파닭	22,000
순살구어스	15,000	구어스+순살양념구어스	22,000
파파닭	16,000	구어스+불닭	22,000
불닭	16,000	구어스+구어스립	23,000
닭다리	16,000	훈제삼겹살 파셀러드	13,000
통날개	16,000	오리훈제샐러드	15,000
양념구어스	15,000	해물볶음면	12,000
순살양념구어스	16,000	케이준치킨샐러드	11,000
다리반+날개반	16,000	영양꼬치	12,000
모듬수제소시지	13,000	얼큰번데기	8,000
매운무뼈닭발	10,000	골뱅이소면	13,000
가쓰오어묵탕	10,000	얼음황도	8,000
얼큰해물짬뽕탕	14,000	모듬포구이	13,000
통노가리	10,000		

4. 영업지역 보호

1)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제도를 채택하는지와 영업지역 안에서 특정 가맹점사업자에게만 영업을 허용하는지 여부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현재 없습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포를 중심으로 도보거리 500m를 원칙으로 하되, 인구, 행정구역, 거리 등을 고려하여 상권에 따라 당사가 미리 영업지역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별첨 1] 지도로표시

- ※ 영업지역 설정기준에서 영업지역 내에 있는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과 같은 대규모 유통집객 시설은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제외됩니다.
- ※ 가맹비 수령의 대가로 받은 금액 중 지역상권부여 및 보호의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영업지역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기간을 제외하고 반환 할수 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 재조정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영업지역 내에 당사의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은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당사는 상기 기재사항 외,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이 없습니다.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 및 수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계약의 기간 및 계약 갱신 기간

☞ [구어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만 [3]년입니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귀하는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당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만 [3]년입니다.

2)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가맹사업법 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정당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
1. 가맹 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십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합의해지, 일반해지, 즉시해지 등 3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와 귀하는 공사가 개시되기 10일 전까지는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행했던 금액과 그때까지 당사가 본 계약상 이행을 위해 지출한 실비용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의 해지가 될 때까지는 본 계약에 의한 각자의 권리를 가지며, 각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일반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으로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일반 해지 사유
1. 귀하가 가맹비 및 로열티 등 금전지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교육 및 훈련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운영매뉴얼 준수 및 감독·시정요구권 각 항에 의거한 당사의 시정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할 경우
4. 귀하의 영업양도 등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5. 상품의 조달과 관리 및 대금의 지불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6. 경영지침준수 및 취급상품 제한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7. 상품공급 및 영업지원의 중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
8. 영업상 비밀공개금지 및 경업금지의무의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9.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계약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0.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3) 즉시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최고 절차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계약조문
1.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자 개시된 경우	6조2항1호
2. 귀하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6조2항2호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귀하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6조2항9호
4. 귀하가 On-Line 및 Off-Line 상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사의 명성이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당사의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6조2항3호
5. 귀하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고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6조2항4호
6.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조2항10호
7. 귀하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응하여 의무위반을 시정한 후에 시정한 날로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6조2항5호
8. 귀하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6조2항6호
9. 귀하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6조2항7호
10.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6조2항8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1. 가맹사업법, 기타 식품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는 경우
2. 귀하와 당사가 상호 서면요청에 의거하여 합의한 경우

- ☞ 재조정 및 동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 또한, 가맹계약서의 효력 발생 후 계약 양 당사자간의 상호합의 하에 기명날인 있는 서면으로 추가 작성된 것은 본 계약의 추가 부분으로써 그 효력의 발생을 인정합니다. 단, 본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은 계약당사자의 기명날인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 상속에 필요한 절차

-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부동산 및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가능시 필요한 절차
환매	불가능		환매제도 운영 안함
양도	귀하는 당사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전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 이에 승인을 얻은 양도인은 최초계약기간의 잔여일에 대하여 양도할수 있으며, 잔여일이 종료된 후에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등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권 등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양도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 →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양수인에게 계약기간의 잔여일동안 영업할수 있는 권한 부여→잔여기간 종료후 계약종결→가맹본부와 다시 가맹계약 체결→가맹비, 교육비 및 계약이행보증금 현금 입금→개업시 교육→가맹점운영권 이전완료
상속	귀하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당사에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잔여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며, 당사의 개업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상속인은 직계 존비속에 한합니다.	가맹점 운영권 등 모든 권리 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계 의사 통지→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면담 포함, 1개월가량소요)→승인여부통지(거절시 구체적사유명시)→승인시 상속인과 가맹본부와 잔여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개업시 교육 비용입금 및 교육→가맹점 운영권이전 완료

2) 가맹점운영을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지와 그에 필요한 조건

☞ 귀하는 대리운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당사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기초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합니다. 단, 위탁경영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대리경영	승인 후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 · 의무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대리경영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개월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거절 시 구체적 사유 명시)→승인시 대리 경영
위탁경영	불가능		당사는 위탁경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명의로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후 그 지역내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귀하가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월 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일반인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닭고기 등을 굽거나 튀긴 형태로 판매하거나 치킨 등 테이아웃 및 배달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승인 요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의 제한에 대한 내용

☞ 당사는 [구어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업일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가맹점사업자 자율	월 26일(2월은 24일) 이상	연속하여 3일 이상 휴업불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가맹점사업자가 고용하도록 권장되는 종업원 수 및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영업장에서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의 종업원 수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권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비고
2명 이상	직접 근무	66㎡(20평) 기준

4)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장을 관리·감독하는지와 관리·감독하는 항목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점포경영 및 운영상태 전반	담당자 매장 방문→관리내역 확인→상담일지 작성→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완료	서울,경기,인천-월 1회 이상 그 외 지역-분기 1회 이상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당사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분담 절차	가맹점사업자간 분담기준
광고 (전국규모)	광고총금액의 50%	광고총금액의 50%	광고기획→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수령 후 2주일이내 지급	원부재료 공급액 비율에 따른 분담
판촉 (전국규모)	-	판촉총금액의 100%	판촉기획→가맹점사업자 분담분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수령 후 2주일이내 지급	원부재료 공급액 비율에 따른 분담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별개로 광고 및 판촉을 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 귀하는 귀하의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자기 지역 내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업표지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관련계약조문
1.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당사 또는 귀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지급하되 그 위약금은 귀하가 운영하는 점포의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부가세포함) 단,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점포개설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매출액을 3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귀하의 직전 3개월간 당사로부터 매입한 월평균 매입액 X 5% X 잔여기간(월)	9조1의 1항
2. 전항의 위약금은 당사와 귀하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9조1의 2항

7.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각 절차에 걸리는 기간, 비용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을 위한 상담 협의 과정에서부터 실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필요한 절차 및 기간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66㎡(20평) 기준 / 당사 시공시	약 [41]일 내외	[64,500,0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및 상담 - 담당자 배정	D-41(1일)	비용 없음
사업설명 및 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0(1일)	비용 없음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희망지역 및 입지 검토 - 희망지역 입지 타당성 분석 및 선정	D-27~39(13일)	자체비용소요
최종협의	- 임대차 계약 체결	D-26(1일)	자체비용소요
가맹계약체결 및 점포개설교육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 점포개설교육(이론교육)	D-25(1일)	예치가맹금 : 10,800,000
점포 실측 및 설계	- 인테리어, 간판, 주방 등시공비용 산출 - 시공 계약 체결	D-23~24(2일)	비용 없음
각종 공사	- 인테리어 시공 - 간판 시공 - 주방 시공 - 각종 인허가 취득 - 교육 실시(인근매장 이론 및 실습교육)	D-3~22(20일)	인테리어:35,200,000 간판:3,300,000 주방관련:13,200,000 홍보물품:1,100,000 초도물품:2,000,000
개정준비마무리	- 공사 완료 - 홍보물품 입고 - 초도물품 입고	D-2(1일)	비용 없음
가오픈	- 가오픈 및 개업 전 최종리허설	D-1(1일)	자체비용소요
개정	- 가맹점 개정 및 영업 시작	D-day	자체비용소요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매장의 규모 및 공사 일정, 인허가 일정 등으로 인해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계약 체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해결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사와 귀하는 가맹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2) 당사자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신청을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신청서면을 제출하여 소송에 앞서 조정에 따라야 합니다.
- 3) 전항의 규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당사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8.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 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 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부가세 포함)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가맹점 오픈시 판촉인원 파견 및 전단지, 기념품 등의 판촉비용 지원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에 따라 판촉인원 수 및 판촉비용 차등 지원	오픈일로부터 2일간	100만원 한도	
판촉장려금	매월 우수가맹점을 선정하여 지원	직전 2개월 평균 매입 금액이 1000만원 이상 가맹계약 위반사항이 없을 것 *지원조건 미충족시 지원하지 않음	가맹계약기간	직전 2개월 평균 매입금액이 1000~2000만원 : 매입금액의 2%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 매입금액의 3% 3000만원 초과시 : 매입금액의 5%	익월 상품대금 차감방식으 로 지원
판촉지원	매월 전체 가맹점의 제품 주문량의 1%를 가맹점의 판촉물로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브로셔, 포스터 등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가맹점에 필요한 판매용집기를 계약기간 동안 무상대여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파라솔 등 일부 품목
반품지원	시즌행사(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가정의날 등)시 출시되는 제품류 중	시즌행사 제품류 중 반품지원 품목 지정상품에 한함	시즌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	가맹점 매입금액의 80% 인정하여 지원금액 산정	

	일정한 품목에 대하여 반품 지원				
마일리지	해당 없음				
CRM	해당 없음				
테스터	가맹점이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공급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신제품 출시 시	소요되는 비용 전액 당사 부담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 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운영팀 (02-454-9231)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0]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02-454-9231)

4.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신용을 제공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의 신용 제공을 주선하는 경우, 신용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및 신용 제공 금액

☞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주류 회사 대출	오비맥주(주)	가맹점주의 신용도에 따라 상이	신용 대출	오비맥주(주) 서류 심사 후 결정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KEB 하나은행	가맹점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	신용 대출	은행 서류 심사 후 결정

※ 구체적인 신용대출금액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및 필수적 사항인지 여부

☞ 당사는 [구어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필수여부
개업시교육	1일차	점포개설을 위한 기초교육	이론교육	개업일 까지	필수
	2일차	공사기간 중 점포체험교육(개점)	실습교육		
	3일차	공사기간 중 점포체험교육(개점)			
	4일차	공사기간 중 점포체험교육(마감)			
	5일차	공사기간 중 점포체험교육(마감)			
	6일차	공사기간 중 점포체험교육(개점~마감)			
	7일차	공사완료 후 개업 전 최종리허설			
	8일차	개업당일 지원 및 보수교육			
	9일차	개업 후 보수교육		당사승인시	
특별교육	신메뉴 출시 및 조리메뉴얼 변경 등		실습교육	추후 공지	필수

※ 교육내용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구어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VAT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개업시 교육	9일	2,200,000	계약체결시 예치
특별 교육	추후 공지	당사 전액 부담	

※ 교육일정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 및 직원 모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가맹점사업자가 불참할 경우에 가맹본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 귀하는 개업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을 할 수 없으며, 점포의 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 2017년, 2016년, 2015년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별첨 2] 주방설비 및 집기 등 개설시 필수공급품목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
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3] 원부재료 등 필수공급품목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4]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영업표지	
제공확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내역서는 귀사와의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 이 자료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복사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본인이 제공받은 가맹점현황 내역서의 유출로 인하여 귀사 및 해당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등 그 전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본부 : (주)델리헨즈 대표이사 조 동 민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본 확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 제공 및 인근 가맹점현황 제공확인서

■ 정보공개서 제공확인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가맹본부				영업표지	
제공확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습니다.”라고 작성합니다.				
	작성해주세요 ⇒				
제공일시	년	월	일	시	제공받은 장소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인근 가맹점현황 문서 제공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_____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현황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 정보공개서 및 가맹점현황 내역서는 귀사와의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된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 이 자료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무단으로 복사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본인이 제공받은 가맹점현황 내역서의 유출로 인하여 귀사 및 해당 가맹점에 피해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 등 그 전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가맹본부 : (주)델리헨즈 대표이사 조 동 민 (인)

가맹희망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영업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